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9월 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9월 16일
6. 모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 또는 매출 총액: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의 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요약정보〉

기준일: 2026.09.03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펀드코드: 55682]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로 전세계의 상장된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글로벌리츠 등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세계의 상장된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배당이익과 자본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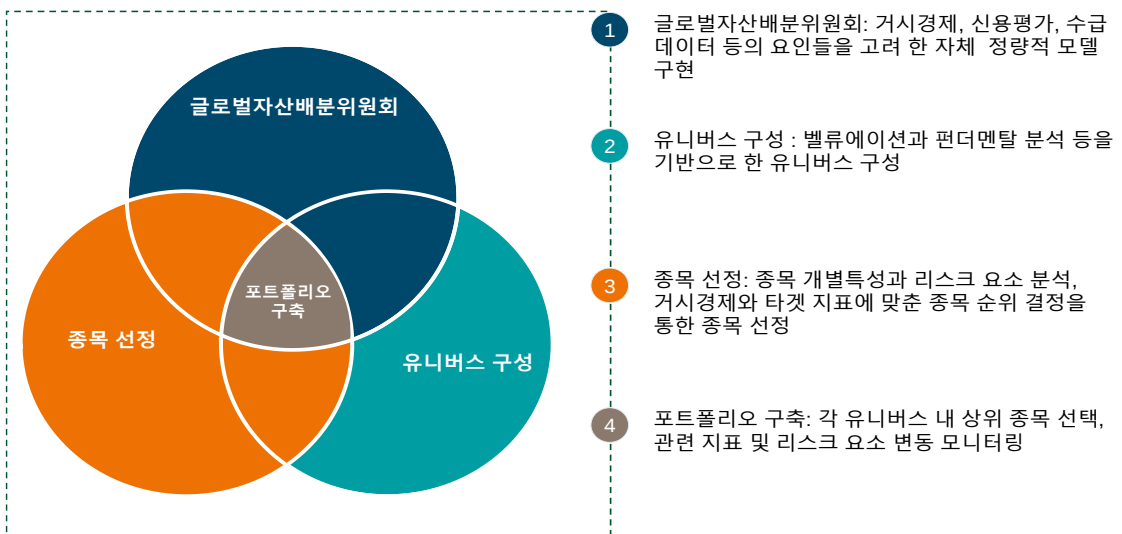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지역의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및 배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섹터별로는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호텔, 산업시설 및 기타 리츠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투자 프로세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을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인 RREEF America LLC에게서 받고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문화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상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BP Call 1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리츠-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택-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1.4800	0.500	0.81	1.7118	274	456	648	1,060	2,2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2.0800	1.100	2.01	2.3118	237	486	747	1,309	2,980
수수료선택-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하	1.2300	0.250	1.33	1.4618	199	356	520	874	1,92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4600	0.480	1.63	1.6918	173	355	547	958	2,1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이하	1.2300	0.250	-	1.4618	150	307	472	828	1,885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택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4/07~ 2026/04/06	2024/04/07~ 2026/04/06	2023/04/07~ 2026/04/06	2021/04/07~ 2026/04/06	2006/03/30~ 2026/04/06
수수료선택-오프라인(A)(%)	12.58	8.64	6.77	2.30	1.69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52
수익률변동성(%)	10.98	11.69	12.16	13.48	20.47

*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BP Call 10%(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
------	----	----	----	------	----------	----

인력			(단위: 개, 억원)		연평균 수익률(해외-부동산) (단위: %)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희영	1978	책임(팀장)	14	7,879	11.26	4.61	5.91	4.71	6년 7개월	
고정희	1986	부책임(매니저)	-	-	-	-			15년	
* 기준일: 2026년 9월 3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글로벌 리츠 등 가격변동 위험	신탁재산을 글로벌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이외 채권, 어음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다양한 수단으로 방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을 위한 거래가 완벽히 수행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이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이동 등에 따른 위험	리츠수익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의 공실을 저하, 세입자 이동, 임대료의 지불채무 불이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부담이 커져 REITs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관련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및 보유기간 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받은 분리과세 혜택에 대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자문업자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		

	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
효력 발생일	2026년 9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0억이상(I)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30억이상 (I)	최초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5568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55728
수수료선취-온라인(A-e)	BR8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20 억이상(I)	614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558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R8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AX0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BU6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658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6025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5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30 억이상(S-I)	AV6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AX0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G2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G23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부동산(리츠-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X]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5568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55728
수수료선취-온라인(A-e)	BR8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20 억이상(I)	614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558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R8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AX0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BU6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658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6025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5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30 억이상(S-I)	AV6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AX0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G2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G23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6. 03. 28	최초설정
2006. 04. 14	종류 B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면제, 종류 F 추가
2006. 10. 02	종류 A-2 추가
2006. 10. 24	신탁재산의 투자대상중 외국주식의 투자한도 비중을 50%이하에서 30%이하로 축소
2009. 05. 03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한화 라살 글로벌 리츠 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한화 라살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1 호(리츠-재간접형))
2010. 05. 03	종류 C 판매회사보수 인하
2012. 03. 19	책임운용역변경(정상훈-)하현석)
2012. 07. 10	책임운용역변경(하현석-)박준흠)
2013. 01. 15	책임운용역변경(박준흠-)김선희)
2014. 02. 21	종류 S 수익증권 신설
2014. 09. 19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및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한화 라살 글로벌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1 호(리츠-재간접형) => 한화라살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 종류 S-I 수익증권 신설 - 종류 수익증권 명칭변경 (A-2 => I, B => A)
2014. 10. 24	종류 C-P, S-P 수익증권 신설
2015. 02. 02	비교지수 변경 UBS Global Investors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2015. 08. 27	종류 수익증권 명칭 변경: C-P => C-P(연금저축), S-P => S-P(연금저축)

2016. 07. 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 2 등급(높은 위험)
2016. 07. 20	환매수수료 삭제
2017. 04. 07	투자위험 등급 및 산정기준 변경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 등급(높은 위험) =>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2017. 06. 19	종류 A-e, C-e 수익증권 신설
2017. 07. 28	종류 수익증권(C-Pe(연금저축)) 추가
2017. 11. 10	책임운용역변경(김선희 -> 유나무)
2018. 10. 11	종류형 수익증권 신설: AG, CG
2019. 04. 01	- 펀드명칭 변경(한화라살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 모펀드의 위탁운용계약 해지 및 투자자문계약 체결
2019. 09. 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유나무 => 박준영)
2019. 09. 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 04. 14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 2 등급(높은 위험)
2020. 05. 08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1. 02. 1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준영 => 강희영)
2022. 04. 14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20.19% → 20.24%)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1.05.07 개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1.10.21 개정)
2023. 04. 12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수익률 변동성 변경(20.24% → 17.82%)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변경 (신한아이타스 → 신한펀드파트너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 02. 20 개정) - 작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4. 04. 25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 - 투자위험등급 변경: 2 등급 → 3 등급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27.03%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03.01)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4.04.14) - 연금세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
2024. 08. 13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 지은송)
2024. 08. 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신한펀드파트너스→하나펀드서비스) (2024.09.02 시행)
2025. 04. 10	- 정기갱신(2025.03.27)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27.08%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5.03.31)

	-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종류 S, S-I, S-P 수익증권 정의 변경)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 용어변경(제 0 영업일 → 0 영업일)
2025. 06. 27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지은송 → 전하영) -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지은송 → 전하영)
2026.01.13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전하영 → -) - 모투자신탁[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전하영 → -)
2026.04.23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2026.03.27)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27.08% → 24.51%)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6.04.06)
2026.09.16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 → 고정희) - 모펀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 → 고정희)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투자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 로 50 한화금융센터 63 (대표전화: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6.09.03)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부동산) (단위: %)				주요 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팀장)	강희영	1978	14	7,879	11.26	4.61	5.91	4.71	- 운용경력년수: 6년 7개월 - Boston University 경제학 학사 - 하나금융투자(5년 9개월) - 가치투자자문(2년 3개월) - 한화자산운용 (2016.11 ~ 현재)
부책임 (매니저)	고정희	1986	-	-	-	-			- 운용경력년수: 15년 - Beijing University 정보관리&경제학 - 한화자산운용 (2008.09 ~ 현재)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3 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4. 07. 28	-	지은송
2025. 06. 27	지은송	전하영
2026. 01. 13	전하영	-
2026. 09. 16	-	고정희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현황]

-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기준일: 2026.09.03)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부동산) (단위: %)				주요 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팀장)	강희영	1978	14	7,879	11.26	4.61	5.91	4.71	- 운용경력년수: 6년 7개월 - Boston University 경제학 학사 - 하나금융투자(5년 9개월) - 가치투자자문(2년 3개월) - 한화자산운용 (2016.11 ~ 현재)
부책임 (매니저)	고정희	1986	-	-	-	-			- 운용경력년수: 15년 - Beijing University 정보관리&경제학 - 한화자산운용 (2008.09 ~ 현재)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부동산(리츠-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0억이상 (I)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30억이상 (II)	최초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P)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신탁재산의 100% 이하

[모투자신탁의 주요 내용]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 전세계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 - 섹터별로는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호텔, 산업시설 및 기타 리츠 등에 투자예정
	주요 투자위험	글로벌 리츠등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 이자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전세계의 상장된 리츠(REITs)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배당이익과 자본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모투자신탁	- 100%이하	- 모투자신탁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용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기 타	- 법시행령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또는 채권,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글로벌 리츠	- 50%이상	- 글로벌 리츠는 법 시행령 제 240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인이 발행한 것을 말함
②해외 부동산관련 주식	- 30% 이하	- 해외 부동산관련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③채권	- 50%미만	- 채권은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④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⑤어음	- 40%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⑥파생상품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 파생상품은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말함
기 타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계약 제 17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 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계약 제 17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동일종목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③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법 시행령 제 240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③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⑧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⑥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 ④의 가 및 나,⑤,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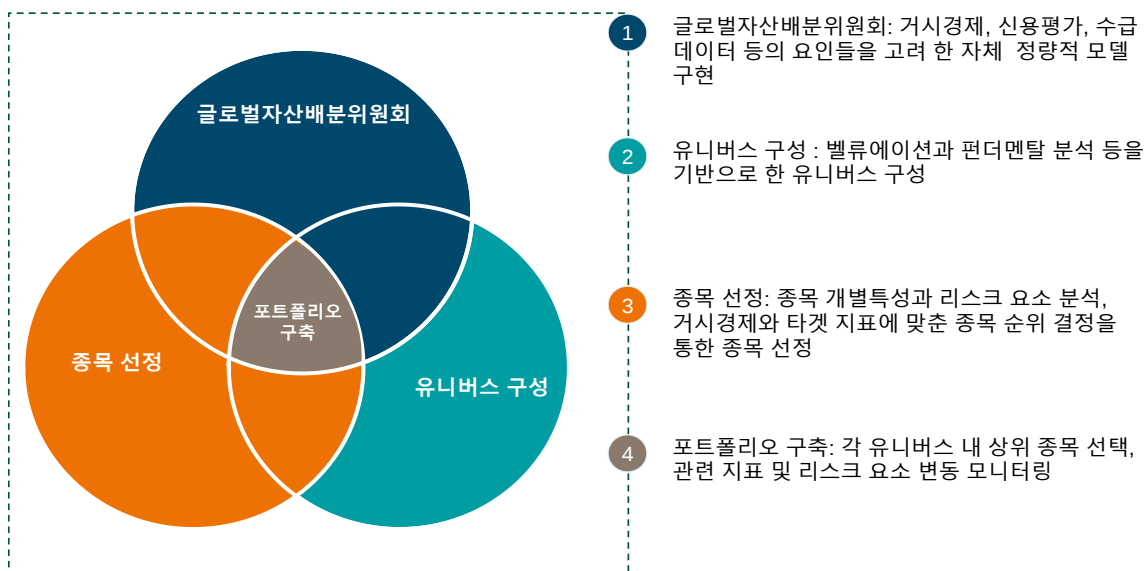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지역의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및 배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섹터별로는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호텔, 산업시설 및 기타 리츠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투자 프로세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을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인 RREEF America LLC 에게서 받고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리츠(REITs)의 개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인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하며,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되는데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1) 환헤지 여부 및 환헤지 방법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모투자신탁에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글로벌리츠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해 헷지 가능한 주요통화(USD, EUR, GBP 등) 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헷지 할 예정입니다.

2) 목표 헤지비용

모투자신탁에 대하여 100% 환헤지는 불가능하며 전체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해 헷지 가능한 주요통화(USD, EUR, GBP 등) 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헷지 비율은 환헷지 가능한 주요통화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그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 헤지비용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주식등)의 매수시점 환율과 매도시점(또는 평가시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가치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외화가치하락/ 원화가치상승)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외화가치상승/원화가치하락)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약의 만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헤지비용 등

-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모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전세계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전세계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츠 및 부동산 관련 주식의 배당수익과 자본수익이 주된 수익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글로벌 리츠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글로벌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이외 채권, 어음 등에도 투자함으로써 해당 투자대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 등의 시장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다양한 수단으로 방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을 위한 거래가 완벽히 수행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이 환율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험	수해, 지진, 화산분화,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인해 부동산이 파손 또는 노화되면 리츠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이동	리츠수익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부동산의

등에 따른 위험	공실률 저하, 세입자 이동, 임대료의 지불채무 불이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부담이 커져 REITs 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해외 리츠 및 부동산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관련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및 보유기간 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받은 분리과세 혜택에 대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모투자신탁이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원리금이나 정산금액 등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헤지 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	모투자신탁은 전세계 리츠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신탁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환헤지는 모투자신탁에서 이루어 집니다. 전체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해 헷지 가능한 주요통화(USD, EUR, GBP 등) 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헷지 비율은 환헷지 가능한 주요통화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그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헷지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외화가치상승/원화가치하락)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약의 만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문업자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 수익증권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24.51%]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하는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다소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기준은 한화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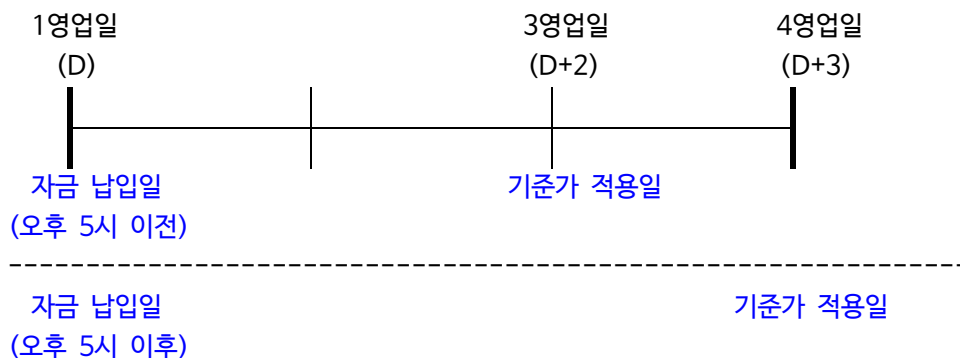
(2) 종류수익증권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20억이상(I)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C-P(연금저축))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연금저축))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30억이상(S-I)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u>최초납입금액 30 억원 이상인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u>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연금저축))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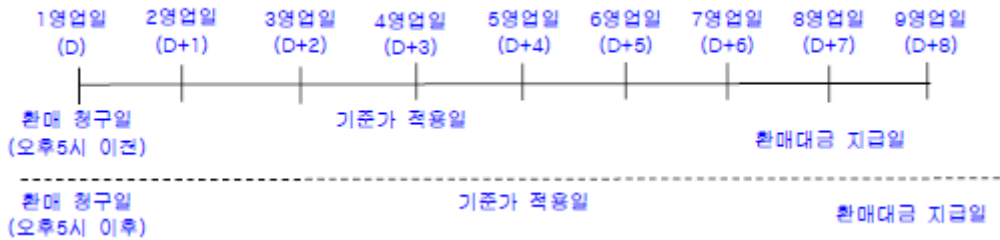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0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 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전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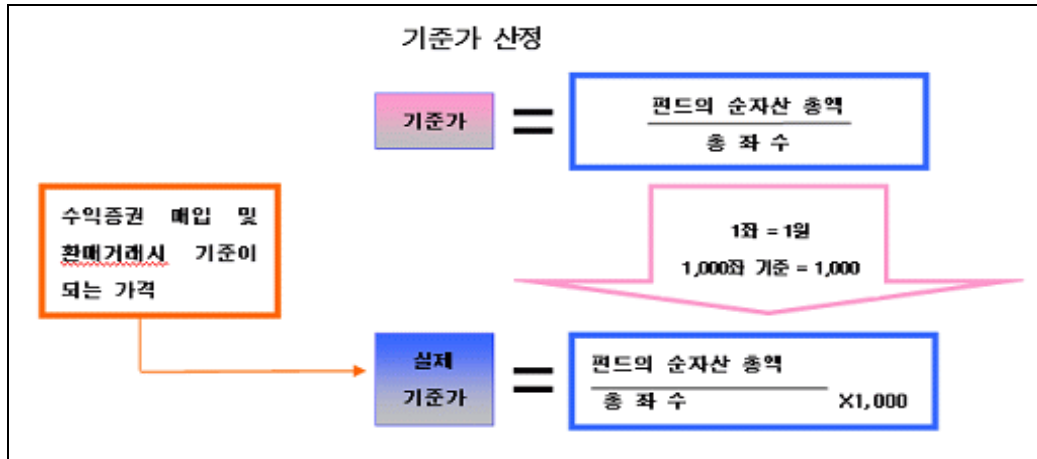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과리율 ^{주 1)} 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과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 1) 증가과리율: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실물자산, 부실자산,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투자재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하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20억이상(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30억이상(S-I)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1.0%이하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지급시기	매입시	-	환매시

주 1) 종류 A-e, AG 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 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종류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 년미만 환매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용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및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90	0.50	0.05	0.03	1.480	0.0001	1.4801	0.81	1.7118	0.0023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25			1.230	0.0001	1.2301	1.33	1.4618	0.002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20 억이상(I)		0.50			1.480	0.0000	1.4800	-	1.7100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1.10			2.080	0.0001	2.0801	2.01	2.3118	0.00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48			1.460	0.0001	1.4601	1.63	1.6918	0.002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연금저축))		0.65			1.630	0.0000	1.6300	-	1.8618	0.00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e(연금저축))		0.325			1.305	0.0001	1.3051	-	1.5368	0.002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타(F))		0.02			1.000	0.0000	1.0000	-	1.2317	0.002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W)		-			0.980	0.0000	0.9800	-	1.2117	0.0023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0.25			1.230	0.0001	1.2301	-	1.4618	0.002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30 억이상(S-I)		0.03			1.010	-	1.0100	-	1.2400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연금저축))		0.20			1.180	0.0000	1.1800	-	1.4117	0.0023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관유지비용(AG)		0.30			1.280	-	1.2800	-	1.51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관유지비용(CG)		0.53			1.510	-	1.5100	-	1.7400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110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146

주 3)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는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 수준이지만, 모투자신탁에 편입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및 개별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비중조절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사전적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도표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이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연간 0.23%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총보수·비용은 이와 상이합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의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해외투자자문사에 대한 자문비용은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지급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금융비용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74	456	648	1,060	2,285
수수료선취-온라인(A-e)	199	356	520	874	1,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20억이상(I)	175	359	553	969	2,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37	486	747	1,309	2,9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73	355	547	958	2,1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191	391	602	1,054	2,4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158	323	497	870	1,981

개인연금(C-Pe(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126	259	398	698	1,5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W)	124	255	392	686	1,56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50	307	472	828	1,8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30억이상(S-I)	127	261	401	702	1,5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145	297	456	800	1,8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274	435	604	967	2,0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178	366	562	985	2,243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 및 AG 수익증권은 1.0%, 종류 A-e 수익증권은 0.5%로 가정)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 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그러나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에게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7 월 20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①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 단,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단, '24.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 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 「자본시장법」 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8 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 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 129 조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 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 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3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8 기(2023.03.28 ~ 2024.03.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9 기(2024.03.28 ~ 2025.03.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0 기(2025.03.28 ~ 2026.03.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상태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6.03.27	2025.03.27	2024.03.27
운용자산	6,357,038,717	8,749,903,149	10,338,212,514
유가증권	6,078,202,943	8,465,451,917	10,066,714,59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78,835,774	284,451,232	271,497,92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16,724,202	88,348,510	106,633,975
자산총계	6,473,762,919	8,838,251,659	10,444,846,48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47,362,815	188,203,145	144,100,029
부채총계	347,362,815	188,203,145	144,100,029
원본	6,098,327,050	8,966,748,788	11,156,276,27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28,073,054	-316,700,274	-855,529,817
자본총계	6,126,400,104	8,650,048,514	10,300,746,460

요약손익계산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6.03.27	2025.03.27	2024.03.27
운용수익	712,022,656	737,862,781	921,206,145
이자수익	5,905,196	7,796,448	15,127,809
배당수익	238,246,392	680,808,976	0
매매평가차손익	467,871,068	49,257,357	906,078,33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18,930,756	146,943,961	170,536,312
관련회사보수	118,750,436	146,710,221	170,232,75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80,320	233,740	303,560
당기순이익	593,091,900	590,918,820	750,669,833
매매회전율	0	0	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895,938,187	521,081	0.0582	1,221,596,912	714,181	0.0585
주식 이외의 증권	5,174,945,415	2,851,375	0.0551	9,642,984,974	5,177,531	0.0537
장내파생	0	0	0.0000	0	0	0.0000
장외파생	0	0	0.0000	0	0	0.0000
부동산	0	0	0.0000	0	0	0.0000
기타(레포,대차,콜 등)	0	0	0.0000	0	0	0.0000
합 계	6,070,883,602	3,372,456	0.0556	10,864,581,886	5,891,712	0.0542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원,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6,380	159,426,528	49,725	736,511,658	1,195,882,171	61.58731	

(주 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6.03.27	2025.03.27	2024.03.27
운용자산	6,357,038,717	8,749,903,149	10,338,212,514
현금및예치금	278,835,774	284,451,232	271,497,922
현금및현금성자산	278,835,774	284,451,232	271,497,922
유가증권	6,078,202,943	8,465,451,917	10,066,714,592
수익증권	6,078,202,943	8,465,451,917	10,066,714,592
기타자산	116,724,202	88,348,510	106,633,975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16,297,158	87,864,542	106,034,106
미수이자	427,044	483,968	599,869
자 산 총 계	6,473,762,919	8,838,251,659	10,444,846,489
기타부채	347,362,815	188,203,145	144,100,029
해지미지급금	93,196,510	56,278,678	105,865,468
미지급운용수수료	14,281,270	19,460,258	22,965,388
미지급판매수수료	8,720,609	11,864,270	13,208,498
미지급수탁수수료	793,075	1,080,822	1,275,765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475,712	648,365	765,370
수수료미지급금	10,290	15,480	19,540
미지급이익분배금	229,885,349	98,855,272	0
부 채 총 계	347,362,815	188,203,145	144,100,029
원 본	6,098,327,050	8,966,748,788	11,156,276,277
이익잉여금	28,073,054	-316,700,274	-855,529,817
자 본 총 계	6,126,400,104	8,650,048,514	10,300,746,460
부채 및 자본 총계	6,473,762,919	8,838,251,659	10,444,846,489
총좌수	5,812,841,649	8,348,674,398	10,616,300,364
기준가격	1,062.52	1,000	973.86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2025.03.28 ~ 2026.03.27	2024.03.28 ~ 2025.03.27	2023.03.28 ~ 2024.03.27
운용수익(운용손실)	712,022,656	737,862,781	921,206,145
투자수익	244,151,588	688,605,424	15,127,809
이자수익	5,905,196	7,796,448	15,127,809
배당금수익	238,246,392	680,808,976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85,294,760	1,092,966,958	2,672,566,097
지분증권매매차익	140,522,777	18,697,591	0
지분증권평가차익	344,771,983	1,074,269,367	2,672,566,097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7,423,692	1,043,709,601	1,766,487,761
지분증권매매차손	17,423,692	221,588,389	692,218,394
지분증권평가차손	0	822,121,212	1,074,269,367
운용비용	118,930,756	146,943,961	170,536,312
운용수수료	69,922,802	86,827,386	101,697,640
판매수수료	42,615,457	52,167,337	59,496,757
수탁수수료	3,883,031	4,822,612	5,649,361
사무수탁수수료	2,329,146	2,892,886	3,388,994
기타운용비용	180,320	233,740	303,56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593,091,900	590,918,820	750,669,833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79.03	63.28	61.6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5,446	4,604	113	99	868	754	4,691	4,266
2024/03/28~2025/03/27	4,691	4,266	315	314	813	777	4,193	4,058
2025/03/28~2026/03/27	4,193	4,058	52	53	1,175	1,191	3,069	3,2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2,620	2,013	46	36	927	679	1,739	1,429
2024/03/28~2025/03/27	1,739	1,429	25	22	270	238	1,494	1,298
2025/03/28~2026/03/27	1,494	1,298	8	7	501	453	1,002	9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0	0	0	0	0	0	0	0
2024/03/28~2025/03/27	0	0	0	0	0	0	0	0
2025/03/28~2026/03/27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611	576	119	117	244	240	487	495
2024/03/28~2025/03/27	487	495	31	32	485	483	33	35
2025/03/28~2026/03/27	33	34	1	1	17	18	17	1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429	407	27	26	175	169	281	288
2024/03/28~2025/03/27	281	288	15	17	104	109	192	210
2025/03/28~2026/03/27	192	202	18	20	42	46	168	1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332	315	28	27	94	92	266	272
2024/03/28~2025/03/27	266	272	27	29	163	177	130	142
2025/03/28~2026/03/27	130	135	15	16	62	66	84	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1,006	933	25	24	262	247	769	766
2024/03/28~2025/03/27	769	766	20	22	133	139	656	695
2025/03/28~2026/03/27	656	656	44	45	320	329	381	4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1,311	1,127	65	58	451	399	924	856
2024/03/28~2025/03/27	924	856	139	139	399	398	664	655
2025/03/28~2026/03/27	664	655	73	75	399	408	339	361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714	654	81	77	183	174	613	605
2024/03/28~2025/03/27	613	605	326	352	327	351	611	644
2025/03/28~2026/03/27	611	619	111	114	405	430	318	3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28~2024/03/27	1,819	1,612	267	246	699	647	1,386	1,324
2024/03/28~2025/03/27	1,386	1,324	254	262	647	659	993	1,011
2025/03/28~2026/03/27	993	993	115	121	386	399	722	78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거나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4/07~ 2026/04/06	2024/04/07~ 2026/04/06	2023/04/07~ 2026/04/06	2021/04/07~ 2026/04/06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006-03-28	14.25	10.26	8.36	3.84	3.23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52
수익률변동성(%)		10.96	11.68	12.14	13.46	20.4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6-03-30	12.58	8.64	6.77	2.30	1.69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52
수익률변동성(%)		10.98	11.69	12.16	13.48	20.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06-04-03	11.91	8.00	6.13	1.68	1.07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48

수익률변동성(%)		10.98	11.70	12.16	13.49	20.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2007-02-28	14.25	10.26	8.36	3.68	3.34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3.46
수익률변동성(%)		10.96	11.68	12.14	13.48	23.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2006-09-18	13.14	9.19	7.31	2.82	1.50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2.69
수익률변동성(%)		10.97	11.69	12.15	13.47	25.2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8	12.86	8.92	7.04	2.56	3.76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61
수익률변동성(%)		10.97	11.69	12.15	13.47	14.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2014-11-21	12.92	8.97	7.09	2.61	3.27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25
수익률변동성(%)		10.97	11.69	12.15	13.47	15.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2014-11-25	12.41	8.48	6.61	2.15	2.74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4.20
수익률변동성(%)		10.98	11.69	12.16	13.48	15.1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7-07-17	12.60	8.67	6.79	2.32	2.68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3.31
수익률변동성(%)		10.98	11.69	12.16	13.48	15.56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07-18	12.86	8.91	7.04	2.56	3.39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3.98
수익률변동성(%)		10.97	11.69	12.15	13.47	15.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2017-11-09	12.77	8.83	6.96	2.48	3.13
비교지수		12.47	9.49	8.30	2.95	3.78
수익률변동성(%)		10.97	11.69	12.15	13.47	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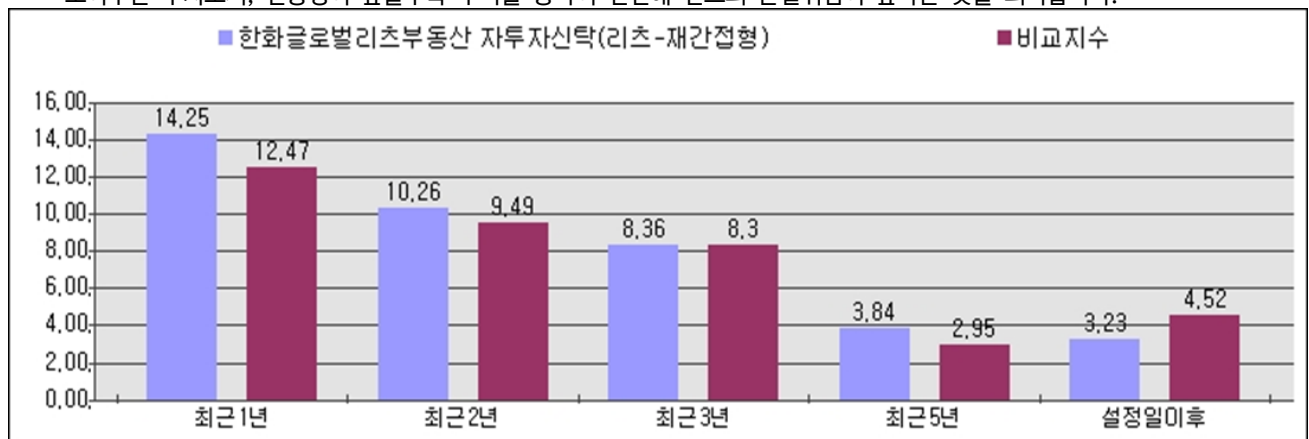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25/04/07~ 2026/04/06	2024/04/07~ 2025/04/06	2023/04/07~ 2024/04/06	2022/04/07~ 2023/04/06	2021/04/07~ 2022/04/06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14.25	6.41	4.68	-18.51	16.41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2.58	4.85	3.14	-19.77	14.73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1.91	4.22	2.52	-20.28	14.05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14.25	6.4	4.68	-18.3	15.27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13.14	5.37	3.66	-19.34	15.29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2.86	5.11	3.4	-19.56	15.01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연금저축))	12.92	5.16	3.45	-19.51	15.06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연금저축))	12.41	4.69	2.98	-19.9	14.55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2.6	4.87	3.16	-19.75	14.74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86	5.11	3.4	-19.56	15.01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연금저축))	12.77	5.03	3.32	-19.62	14.92
비교지수	12.47	6.59	5.97	-19.17	12.63

주 1) 비교지수: FTSE EPRA/NAREIT Developed Index (Total Return) 90% + 매경 BP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6.04.06 현재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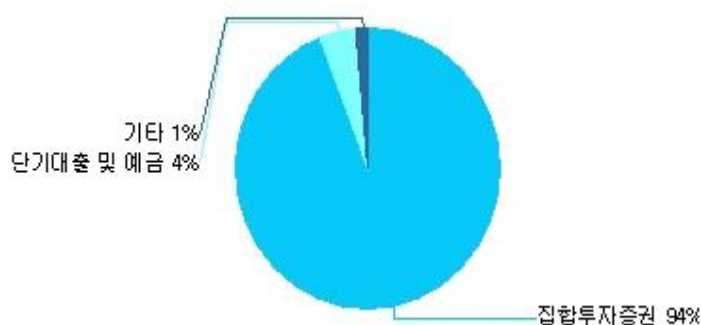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6,065	0	0	0	0	0	274	96	6,434
	(0)	(0)	(0)	(94.26)	(0)	(0)	(0)	(0)	(0)	(4.25)	(1.49)	(100)
자산합계	0	0	0	6,065	0	0	0	0	0	274	96	6,434
	(0)	(0)	(0)	(94.26)	(0)	(0)	(0)	(0)	(0)	(4.25)	(1.49)	(1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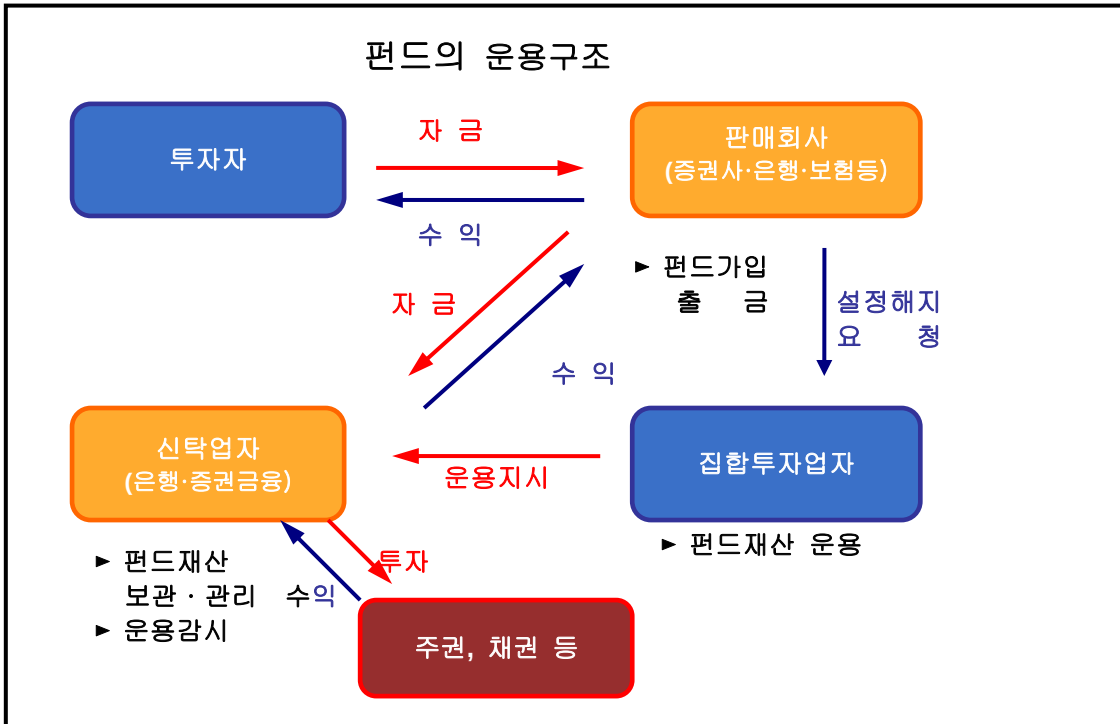
주 2)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 조 700 억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8기 (25.12.31)	제37기 (24.12.31)	항목	제38기 (25.1.1 ~25.12.31)	제37기 (24.1.1 ~24.12.31)
자 산			영업수익	161,551	151,890
현금및현금성자산	20,792	50,424	영업비용	116,771	105,418
예치금	45,080	2,517	영업이익	44,780	46,47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53,116	313,830	영업외수익	20,306	45,1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0,200	18,314	영업외비용	790	2,96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905,590	1,005,522	법인세차감전	64,296	88,616
대출채권	3,410	2,787	법인세비용	14,584	21,040
유형자산	17,079	15,906	당기순이익	49,712	67,576
무형자산	2,845	2,725			
이연법인세자산	25,841	3,959			
기타금융자산	70,052	64,408			
기타자산	2,175	1,710			
자 산 총 계	1,476,180	1,482,102			
부 채					
예수부채	44,648	2,320			
충당부채	2,228	1,721			
순확정급여부채	-1,430	-1,295			
당기법인세부채	5,336	8,663			
리스부채	13,473	11,649			
기타금융부채	20,276	21,741			
기타부채	1,274	1,017			
부 채 총 계	85,805	45,816			
자 본					
자본금	1,070,000	1,070,000			
기타불입자본	3,459	3,459			
기타자본구성요소	-87,551	-8,507			
이익잉여금	404,467	371,334			

자 본 총 계	1,390,375	1,436,28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76,180	1,482,102			

라. 운용자산 규모

[단위: 억원/기준일 : 2026.04.06]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01,114	64,378	11,082	0	54,903	24,315	0	38,922	116,129	12,358	114,972	538,17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모펀드의 해외 투자자문업자)

해당 펀드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해외 투자자문업자	RREEF America LLC
자문범위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
회사주소	345 Park Avenue, New York, NY10154, USA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1588-7000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02) 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m

* 2024.09.02 일자로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한펀드파트너스(주)에서 하나펀드서비스(주)로 변경.

나.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자산평가(주)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 225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T. (02) 2192-1114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함)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주 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 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 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25.04.07 ~ 2026.04.06)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거래	평가항목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	주문집행능력	비용 또는 수익	합계
	항목 가중치	60%	20%	20%	100%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 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과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